

2019년도 경기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광고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지원 사업 안내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경기도와 (재)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열악한 초기단계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우편함 지원 등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일명 가상오피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08월 01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1.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비)자 중 개인사업자
※ 법인 사업자 제외함

나. 참여조건

- (1) 경기도내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자
- (2)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 아래 붙임[참고] 자료 참조
- (3)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 (4)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다.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 (2)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서 [제1호 서식] (반드시 작성,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 (3)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제2호 서식] (반드시 작성,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발급 후 제출), 전체이력

라. 지원 대상 업종

-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작성하는 정부승인통계인 ‘콘텐츠 산업통계’에 따라 총 12개 분야 및 ICT융복합 분야
- (2) 신청서 작성 시 지원 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기타분야로서 상세히 기재
※ 아래 붙임 [참고]지원 대상 업종 분류 참조

2. 지원내용

가.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주소지 : 광고경기문화창조허브
- (2) 사업자등록을 위한 가상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나. 사용대차 내용

-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
- (2) 가상오피스 우편함 ※ 지원 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다. 사용대차 비용 : 무상

3. 지원 조건

가. 가상오피스 지원에 따른 계약체결

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담당자가 요청한 기간 내에 광고 경기 문화 창조허브로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후 사업자 등록증 제출

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 또는 서면을 통한 창업수행 현황 보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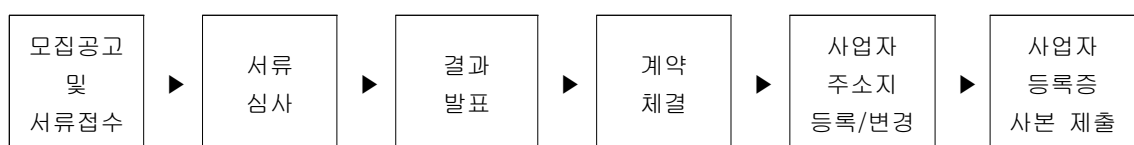
- (1) 창업기업 구성원(명)수
- (2) 당월 매출실적
- (3) 사업자등록현황
- (4) 기타 창업수행 관련 재단이 요구하는 자료

※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자 중 이미 사업자등록(개인)을 소지한 창업자는 지원계약 체결 후, 사업장 소재(주소지)를 반드시 광고 경기 문화 창조허브로 변경해야 함

라. 사업영위 변경사항 통보(폐업, 이전, 업체 명 변경, 법인 설립 등) 사업영위 변경 시, 지체 없이 즉시 통보 하여야 함 ※ 미 통보 시 불이익 또는 제재

4. 선발체계

가. 심사/발표 절차



나. 접수기간 : 2019년 8월 1일(목) ~ 2019년 8월 18일(일) 24:00 까지 (18일간)

※ 제출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함

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 ① 경기콘텐츠진흥원 : www.gcon.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 ② 경기문화창조허브 : www.gcon.or.kr/ghub 프로그램 안내 메뉴에서 확인

5. 신청 방법

가.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서면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

- ① 지원안내 숙지 후 관련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서 작성 및 날인
※ 계약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도장 날인 필수, 서명 불가
- ② 재단이 요구하는 증빙자료 구비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③ 작성/날인 문서 및 증빙서류를 각각의 PDF 파일로 변환 ※ 이미지 파일 불가
- ④ 담당자 E메일로 제출 ※ 제출 기한 엄수

6. 제출 방법

가. 제출처 : ggvo@gcon.or.kr

나. 제출 제목 : [가상오피스지원_2차] 성함(기업명)

다. 제출 서류 : 여러 개의 PDF 파일을 하나의 압축 형식(ZIP)으로 제출

※ 유의사항

- 계약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도장 날인 필수, 서명 불가
- 제출하는 모든 날인 본 서식과 증빙자료는 지원 대상 선정 후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신청 시 안내문을 숙지하여 제출이 미비한 서류 및 내용이 없도록 유의
- 가급적 컴퓨터로 서류 작성,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작성 서류는 스캔 파일로 제출 해야 함. 촬영 이미지 파일 불가

7. 선정 및 발표

가. 결과 통보 : 2019년 8월 말 예정

※ 유의사항

- 선정 대상자 개별통보, 모든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관련 문의처 : 광고 클러스터센터 가상오피스 담당자

정희우 매니저 031)8064-1724 / ggvo@gcon.or.kr

붙임 : 1.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2. [제2호 서식]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제공 동의서

3. [제3호 서식]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서

4. [참고] 지원 대상 업종 분류

5. 스마트 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1.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창업자는 예정(계획) 기준으로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지			전화	
최종학력	년 월	(고등, 대)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 재학)	
경 력	근무기간(년월)	근 무 처	업종(품목)	최종직위(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2. 창업(예정)기업체 현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창업자는 예정(계획) 기준으로 작성

*업체명			*대표자명	
*개업일자			*업종 (품목)	
*소재지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본 사				
*사업장				
*창업(예정)분야	☐ 출판 ☐ 만화 ☐ 음악 ☐ 게임 ☐ 영화 ☐ 애니 ☐ 방송 ☐ 광고 ☐ 캐릭터 ☐ 지식정보 ☐ 콘텐츠솔루션 ☐ 공연 ☐ 디자인 ☐ 관광 ☐ S/W ☐ H/W ☐ 한류콘텐츠 ☐ ICT융합 ☐ 기타() ※ [별표 제1호 지원대상 업종분류]를 참고하여 선택 및 기타는 상세히 기재			
이메일		*홈페이지		*상시근로자수
*기업형태	☐ 개인기업 ※ 법인기업의 경우 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 관련 전문자격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 대외기관 인증 및 수상, 창업연수 참여 실적>				
년 월	내 용			

3. 인력현황

직위	성명	전공	기술자격	등록기관

4. 영업현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창업자는 예정(계획)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주요거래처									
구 매 처					판 매 처				
상 호	사업자번호	월평균 매입액	거래조건		상 호	사업자번호	월평균 매입액	거래조건	
			거래 비율	결제 기간				거래 비율	결제 기간
최근 판매실적(. . . ~ . . .) : ()					수주상황(. . . 현재) 국내계약액() / 수출계약액()				

주1) 거래조건 “비율”란에 현금·외상비율 기재, “기간”란에 외상거래의 결제기간 기재 (예: 90일 어음, 30일 신용 등)

주2) () 내에는 수출실적(단위: 천불) 및 L/C보유액을 기재

5.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실적 및 추정매출액						
구 분	(전기) 2018년 매출액		(당기) 2019년 추정 매출액		(차기) 2020년 추정 매출액	
매출액	국내		국내		국내	
	수출		수출		수출	
	합계		합계		합계	
추정근거						

6. 사업 추진계획 (자유롭게 기재하되,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출 가능)

제품(서비스)의 주요내용	(제품의 특성 및 핵심기술, 기술개발 내용 및 과정, 생산 공정도 등)
시 장 분 석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동업종 경쟁상황,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 및 품질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의 기술, 품질, 가격 비교 등)
생산(판매) 추진계획	(개발완료 및 제품화 시기, 설비도입 및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

7. 허위자료 제출 시 제재사항

이 자료는 스마트오피스 가상오피스 지원을 받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고소·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8.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

이 자료는 스마트오피스 가상오피스 지원 평가 및 기업홍보 등을 위하여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작 성 일 : 2019년 월 일	창업(예정)업체명 :
작 성 자 :	대 표 자 : (인)

제2호 서식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광고 경기문화창조허브 스마트오피스 지원과 관련하여 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기업)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경기도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 신용정보 조회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문화창조허브 스마트오피스 지원 사업」 관련 평가, 만족도 조사, 정책자료 활용 등
- 신용도 판단 (신용 조회에 따른 기업 또는 기관, 대표자의 신용평가등급의 영향 없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기업)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기업)정보	신청자 제출 자료 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명 :

(서명)

광고 경기문화창조허브 스마트오피스 가상오피스(2차) 지원 신청서

① 사용대차 내역	※ 아내 내용은 지원사업 담당자가 작성.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 스마트오피스		
사용대차 부분	스마트오피스 창업공간(공용)	면적	3.3㎡
	스마트오피스 지정 우편함	번호	#
사용대차 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참여사업 (참여사업이 있을 경우)			
지정내용 (참여사업이 있을 경우)	2019년도 가상오피스 지원 사업		

② 임대인(갑)	※ 아내 내용은 지원사업 담당자가 작성.		
대표자 성명			
법인명(단체명)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130-82-12609		
본점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8번길 18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9층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 스마트오피스		

③ 임차인(을)	※ 아래 신청자 정보 기입 및 날인하여 신청. (날인은 계약체결용 도장 날인)		
대표자 성명	(인)		
창업(예정)기업명			
주민등록번호	-		
거주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상기와 같이 광고 경기문화창조허브 스마트오피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지원을 요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첨부.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1부. ※ 계약체결 후 배포함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참고

지원 대상 업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출판산업	출판업	서적 출판업 (종이매체출판업)	신문, 잡지, 교과서(학습서적)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과 서적 성격의 팜플렛을 출판하는 사업체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교과서 및 어린이 학습지 등의 서적 출판을 하는 사업체
		신문 발행업	사회전반을 다루는 것을 말하지만, 일간, 주간, 순간으로 발행(기관지, 전문지, 일반 상업지)하는 사업체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전문적인 내용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 순간, 월간, 연간 등의 잡지 및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사업체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부동산, 중고품등 각종 상품거래안내, 산업활동 안내, 구인·구직 등에 관한 정기적인 광고간행물을 발행하는 사업체
		기타 인쇄물 출판업	위의 소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서적 또는 인쇄물을 출판하는 사업체
	인쇄업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출판물을 각종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사업체(광고물 제외)
	출판 도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	각종 서적 및 잡지류를 도매하는 사업체(만화 제외)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각종 서적 및 잡지류를 소매하는 사업체(만화 제외)
	온라인 출판 유통업	계약배달 판매업 (신문배달판매)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배달하는 사업체: 외부자료 인용(통계청)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 제작업	단행본, 간행물, 전자출판물을 별도의 뷰어 또는 플레이어를 설치 및 실행하여 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사업체 (e-book제작 등)
		인터넷/모바일전자출판 서비스업	출판물을 전산화하여 제작된 전자출판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체
만화산업	만화출판업	인터넷서점(만화제외)	오프라인 서점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사업체
		서적임대업(만화제외)	각종 서적, 정기간행물, 잡지 등 인쇄기록물을 임대하는 사업체(만화 제외)
	온라인 만화제작·유통업	만화출판사(만화잡지, 일일만화, 코믹스 등)	만화잡지를 포함하여 만화도서를 전문으로 발간하는 출판사
		일반 출판사(만화부문)	일반 도서를 발간하는 출판사 중 만화도서(학습/교양만화 포함)를 발간하는 출판사(일반출판사의 만화 출판)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CP)	단행본 만화, 만화잡지 등을 인터넷/모바일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사업체
	만화책 임대업	인터넷 만화콘텐츠 서비스	단행본만화 또는 만화잡지 등 전자출판물 형태로 제작된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
		모바일 만화콘텐츠 서비스	단행본만화 또는 만화잡지 등 전자출판물 형태로 제작된 콘텐츠를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
		서적임대(대여) (만화부문)	각종 만화서적, 만화잡지 등을 임대만 하는 사업체 (장소제공 안됨)
	만화 도소매업	만화 서적 및 잡지류 도매	각종 만화서적 및 만화 잡지류를 도매하는 사업체
		만화 서적 및 잡지류 소매	각종 만화서적 및 만화 잡지류를 소매하는 사업체
음악산업	음악제작업	인터넷 서점(만화부문)	오프라인 서점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사업체
		음악 기획 및 제작업	음반 및 음원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체(CP제외)(음원제작 및 관련 비즈니스업을 수행하는 업체)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관련 악보를 출판하는 업체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기타 오디오물을 제작하는 업체(출판관련)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음반을 복제하는 사업체
		음반 배급업	음반을 도소매업 사업체에게 배급하는 사업체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음반을 도매하는 사업체
		음반 소매업	음반을 소매하는 사업체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인터넷 음반 소매업	오프라인 음반매장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음반을 판매하는 사업체
		인터넷/모바일 음악 서비스업	음원대리 중개업체로부터 음원을 양도받아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
		음원 대리 중개업	음원권리자로부터 음원의 권리를 양도받아 온라인상으로 중개하는 사업체
	음악 공연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	음원을 제작하여 모바일 음악서비스 업체 및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체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음악공연(뮤지컬, 대중음악, 클래식, 오페라, 전통공연 등)을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단, 연극은 제외)
게임산업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음악공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티켓발매 등)	음악공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티켓발매 등)
		게임 기획 및 제작업	게임을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
	게임 도소매 및 임대업	게임 배급업	제작된 게임을 배급하는 사업체
		게임 도소매업	게임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사업체
		게임 소프트웨어 도소매업	게임 소프트웨어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사업체 (CD, DVD, 파일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영화산업	영화 제작, 지원 및 유통업	영화 기획 및 제작	일반 영화를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일반 영화/제작)
		영화 홍보 및 마케팅	일반 영화를 홍보 및 마케팅하는 사업체
	DVD/VHS 제작 및 유통업	온라인 상영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영화를 서비스하는 사업체
애니메이션 산업	애니메이션 제작업	애니메이션 창작 제작업	창작 애니메이션 기획 및 직접 제작하는 사업체
		애니메이션 하청 제작업	애니메이션을 외주제작, 주문제작 및 재하청하는 사업체
		온라인(인터넷·모바일)애니메이션 제작업	인터넷용 및 모바일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사업체
	애니메이션 유통 및 배급업	애니메이션 유통, 배급 및 홍보	극장용, 방송용, 홈비디오용 애니메이션을 유통, 홍보, 마케팅 및 홍보하는 사업체
	온라인 애니메이션 유통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서비스업(인터넷, 모바일)	애니메이션을 인터넷 및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애니메이션만 해당)
방송산업	방송영상물제작업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체
	인터넷 영상물 제공업	인터넷방송영상물 서비스업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 사업체
광고산업	광고(종합)대행업	광고대행·매체대행	재정적인 자원이나 제작·설비 등을 방송 사업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TV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체
		광고기획·전략대행	방송영상물을 콘텐츠화 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
	광고 제작업	CM·영상·카피·그래픽 제작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물을 기획하고 이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매체와 접촉하여 매체집행을 하는 사업체
		온라인 제작	광고활동을 계획하거나, 카피, 매체 등 종합적인 광고캠페인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사업체
		광고사진 스튜디오	광고메시지, 광고물, 광고그래픽 등을 제작하는 사업체
		CI(Commercial Identity) 제작	배너(Banner), 이벤트페이지, 웹 사이트 등 각종 온라인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체
	서비스업	마케팅·리서치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된 사진 촬영, 신문, 잡지, 포스터 광고 촬영 및 카탈로그 촬영을 하는 사업체
		PR(Public Relations)	기업의 상징, 마크, 로고타입, 기업컬러 등을 제작하는 사업체(광고문안 CI 작성)
		SP(Sales Promotion)	마케팅 활동의 기획, 수정 및 평가를 위해 내부 및 외부 정보 수집하여 분석하는 사업체
		이벤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중의 이해와 호감을 얻고자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의 업무(홍보, 행사, 행사 기획, 홍보물제작 등)를 전문으로 행하는 사업체(광고 PR)
		공간 디자인	매스컴 매체에 하는 광고가 아니라 판매에 직결한 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체(DM광고, 프리미엄, 견본배포, 노벨티, 콘테스트, 소비자교육 등), 매스컴 매체 광고 대행 제외
	인쇄업	인쇄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의 기획·연출·제작·설계 등을 하는 사업체 (이벤트행사대행)
	온라인업	광고대행	전시기획 및 제작, 전시설치를 제작·관리,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등을 하는 사업체
		매체대행	브로슈어, 카탈로그, 리플렛전단, 원색인쇄물, 책자, 포장물 및 사보제작·편집하는 사업체 (광고물인쇄업)
		광고기획·전략대행	광고주를 대신하여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광고물을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온라인 광고 대행 및 대체 대행)
		광고제작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를 대신하여 온라인 광고 지면을 구입해 주는 업무를 하는 사업체
	기타업	광고물 기획·편집	온라인 광고활동을 계획하거나, 카피, 매체 등 종합적인 광고캠페인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사업체
캐릭터 산업	캐릭터 제작업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	배너(Banner), 이벤트페이지, 웹 사이트 등 각종 온라인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체
		캐릭터상품 제조업	영상 또는 인쇄 광고물을 편집하는 사업체(광고물 기획 및 편집)
	캐릭터 상품 유통업	캐릭터상품 도매업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하여 라이선스를 받는 사업체(캐릭터 디자인)
		캐릭터상품 소매업	캐릭터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캐릭터를 포함시켜 제조 하는 사업체 (캐릭터상품 제조)
	캐릭터 상품 온라인 유통업	인터넷 및 모바일 캐릭터 서비스업	캐릭터라이선스 비용이 지불된 캐릭터상품을 도매하는 사업체(모자, 귀걸이, 넥타이, 머리핀, 손수건, 브로치, 양말 등 포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지식정보업	e-learning업	e-learning 기획업	캐릭터라이선스 비용이 지불된 캐릭터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체
		e-learning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업	캐릭터라이선스 비용이 지불된 캐릭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사업체(캐릭터만 해당)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	유아, 초중고, 성인 등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업체(온라인 학습정보 서비스 기획)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	인터넷과 모바일로 온라인/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사업체(온라인 학습정보 서비스 기획)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기존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온라인/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비스 사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체(CP)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학습용 게임, 멀티미디어 도감, 비디오 교재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체(오락성을 가미한 학습정보 기획 및 제작업)
콘텐츠 솔루션 산업	콘텐츠 솔루션업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기획 및 제작업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사업체(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이러닝서비스 제외)
		기타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서비스업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정보, 뉴스 등 이용자 제작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사업체
		저작물	3차원 영상 등을 통해 디지털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가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와 유사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
		콘텐츠보호	디지털 가상세계 콘텐츠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느낄 수 있는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모바일솔루션	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및 편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저작도구(영상, 게임, LMS, e-learning 등)(CG 제외)
		과금/결제	유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고 유통 과정 중 발생하는 콘텐츠의 불법 사용을 추적하기 위한 솔루션(DRM 등), 콘텐츠 보호
공연산업 (음악공연 제외)	컴퓨터그래픽스(CG) 제작업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모든 서비스 및 플랫폼 (MMS/SMS의 문자서비스, 모바일 멀티미디어 전송 관련 서비스 및 모바일 플랫폼)
		기타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콘텐츠 이용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솔루션(신용카드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등)
공연산업 (음악공연 제외)	공연업	컴퓨터그래픽스(CG) 제작업	온라인 상의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생산, 유통, 삭제, 업데이트 등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솔루션
		공연기획 및 제작업	콘텐츠 저장과 검색 도구 등 디지털콘텐츠 검색, 디지털방송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솔루션 및 웹에이전스 등 용역 및 서비스

※ 「콘텐츠 산업통계」 기본 업종 분류표 외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디자인산업	디자인업	전문디자인업	인테리어, 제품, 시각 디자인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등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촬영 업 등
소프트웨어 (S/W)	소프트웨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ICT융합	ICT융합	ICT융합	IT기술과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융합관련 업. 미디어아트, 관광, 한류콘텐츠, 스토리텔링 등 융합분야

※ 같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본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제외 업종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지원제외 업종의 예 : 불건전 영상게임 관련, 도박주류담배 관련,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등

(재)경기콘텐츠진흥원 광고 경기문화창조허브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① 임대인	
대표자 성명	(인)
법인명(단체명)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130-82-12609
본점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8번길 18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2동 9층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56, 광고비즈니스센터 11층, 스마트오피스

② 임차인	
대표자 성명	(인)
창업(예정)기업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③ 사용대차 내역	※ 사용대차 내역은 지원사업 담당자가 작성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56, 광고비즈니스센터 11층, 스마트오피스		
사용대차 부분	스마트오피스 창업공간(공용)	면적	3.3㎡
	스마트오피스 지정 우편함	번호	V02#
사용대차 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참여사업 (참여사업이 있을 경우)			
지정내용 (참여사업이 있을 경우)			

④ 사업자등록 내역	※ 사업자등록 후 세부내용 작성 및 등록증 사본 별첨 必		
대표자 성명	(인)		
상호			
등록번호			
개업 연월일	년	월	일
사업의종류	(업태)	(종목)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사무 공간 확보가 열악한 초기단계 창업(예정)자(이하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등 가상오피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물) 진흥원은 창업자에게 위 ③사용대차 내역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제3조(기간) 사용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4조(용도) 창업자는 본 계약 사용대차 내역을 창업활동과 사업자등록지 사무공간으로써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임대 및 사용·수익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지원대상 업종) 창업자의 사업자등록 업종, 업태 분류 상 불건전 영상·게임관련, 도박·주류·담배관련,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 국제·외국기관 등 본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이 있을 경우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우편물) 진흥원은 창업자 앞으로 수신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관리 책임지지 않으며, 창업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우편물을 수취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은 폐기하며, 창업자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없다.

※ 내용증명, 등기, 택배, 커서비스, 화물 불가

제7조(손해배상) 창업자가 본 계약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했을 때는 이로 인하여 진흥원이 받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해제권) 창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진흥원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창업자는 사용대차 내역 시설에 대한 진흥원의 점검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시설을 100% 자비를 통해 원상으로 회복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배상지체의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10조(해지기준) 진흥원은 창업자가 해당 사무공간에 대해 미사용 시에는 창업자가 본 사무공간에 대해 이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창업자가 진흥원의 이미지를 하락 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보고서) 창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진흥원이 요구할시 대면 인터뷰 또는 서면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창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진흥원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창업자 창업기업 구성인원(명)
2. 창업자 창업기업 당월 매출액
3. 창업자 창업기업 사업자등록현황(최초 보고 시 사본 제출) 등

제12조(특약사항) 창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 50일 이내에 광고 경기문화창조허브로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본 계약 기간 내에 진흥원이 창업자에게 이용에 따른 결과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창업자가 이를 지키지 못할 시는 진흥원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효력발생)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그 증빙으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진흥원, 창업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부정·부패 방지 및 청렴안내

경기콘텐츠진흥원 임직원은 부정청탁방지법 등에서 정의한 불법적 대가 및 선물, 부적절한 청탁 등을 받지도,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유·무형의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요청(권유)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발생이 되거나, 인지하셨을 시 우리 원 검사혁신역실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클린신고센터 : <https://www.gcon.or.kr/clea> , 담당자연락처 : 032-623-8091)

2019년 월 일